

사 연 구 분	2023-01-01 ~ 2023-12-31	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	법 인 명	주식회사 맥스트
	사업자등록번호		114-86-83769	

구분	① 요 건	② 검 토 내 용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															
중 기 업 요 건	(101) 사업요건 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 업태별</th> <th>기준경비율 코드</th> <th>사업수입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01) (서비스)업</td> <td>(04) 722000</td> <td>(07) 1,610,851,531</td> </tr> <tr> <td>(02) ()업</td> <td>(05)</td> <td>(08)</td> </tr> <tr> <td>(03) 그밖의 사업</td> <td>(06)</td> <td>(09)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</td> <td>1,610,851,53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 업태별	기준경비율 코드	사업수입금액	(01) (서비스)업	(04) 722000	(07) 1,610,851,531	(02) ()업	(05)	(08)	(03) 그밖의 사업	(06)	(09)	계		1,610,851,531	(17) 적합 (Y)	(26)
	구분 업태별	기준경비율 코드	사업수입금액																
	(01) (서비스)업	(04) 722000	(07) 1,610,851,531																
	(02) ()업	(05)	(08)																
(03) 그밖의 사업	(06)	(09)																	
계		1,610,851,531																	
(102) 규모요건 ○아래 요건 ①,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"평균 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봄)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-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	가. 매출액 - 당 회사(10) (16.1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11) (800.0 억원) 이하 나.자산총액(12) (516.3 억원)	(18) 적합 (Y)																	
(103) 독립성요건 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(102)의① 기준) 이내일 것 	(19) 적합 (Y)																	
(104) 유예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(102)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	○사유발생 연도(13) (년)	(20) 적합 (Y)																	
소 기 업	(105)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중소기업 업종(101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103)을 충족하는지 여부	(21) 적합 (Y) (N)	(27)															
	(106)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본다) 이내일 것	가. 매출액 - 당 회사(14) (16.1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15) (50.0 억원) 이하	(22) 적합 (Y) (N)	(28) 적합 (Y) 부 (N)															

구분	① 요 건	② 검 토 내 용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						
중 견 기 업	(107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(101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(23) (Y), (N)	(28) 적 (Y) 부 (N)						
	(108)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30%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 	(24) (Y), (N)							
	(109)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[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]: 1천5백억원 미만 (신규성장 중견기업에 한함)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)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: 3천억원 미만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71 757 1326 952"> <thead> <tr> <th>직전 3년</th> <th>직전 2년</th> <th>직전 1년</th> <th>평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9.8 억원)</td> <td>(23.7 억원)</td> <td>(28.6 억원)</td> <td>(24.0 억원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전 3년	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(19.8 억원)	(23.7 억원)	(28.6 억원)
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						
(19.8 억원)	(23.7 억원)	(28.6 억원)	(24.0 억원)							